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5778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절차적 ·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2.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 · 추진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한 감사
3.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변경 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
4.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첫째,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장의 검토 지시 후 3개월 만에 운영사업자를 공모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도출 전 실시협약 체결, 운영조례 발의, 투자심사 의결, 선박건조계약, 합작법인 설립 등이 이루어진 것이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둘째, 타당성조사 또는 경제성분석 시 선착장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구입비(약 500억원)는 의도적으로 비용에서 제외시킨 의혹이 있으며,

셋째, 2차례의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1차 물량 일부를 포기한 업체에게 2차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응찰자 평가점수 중 특정항목의 배점을 높이거나 특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계약절차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넷째,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속도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당초 목표치(20노트, 마곡-잠실 54분)에 미달할 것(15노트, 마곡-잠실 1시간 30분)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리버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2.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 · 추진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한 감사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전체 파출소의 32%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경찰조직의 개편을 동반함. 이러한 사항은 경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 그럼에도 경찰청은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3.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변경 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

서울특별시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문래동3가 옛 ‘방림방적’ 위치에 1만 2,947m² 규모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해당 사업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시·구의회 의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음.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해당 사업내용을 포함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허위사실 기재 등을 통해 사업부지를 졸속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4.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사

서울특별시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규모, 사업체 대표의 개인경력 인정, 단독 공모 인정 등의 요건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또한, 사업자의 자본금 납입이 당초 정해진 기한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재원조달도 협약서에 따라 조달해야 하는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을 인지한 후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이중계약서가 나오는 등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